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0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준혁 · 김영진 · 서삼석
송재봉 · 진성준 · 진선미
양부남 · 이춘석 · 강경숙
김남희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박사후연구원) 학교에는 박사후연구원을 두어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박사후연구원) 학교에</u> <u>는 박사후연구원을 두어 교원의</u> <u>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u> <u>·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u> <u>게 할 수 있다.</u>